

-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견-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2. 지출내역

○ 총 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출결정액	예산잔액
일반회계	956,518	909,144	47,374

○ 사업별 지출내역

사 업 명	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지출일자	사 유
계	956,518	909,144	-	47,374		
지방선거관리 경비	218,364	202,549	-	15,815	07. 1. 9	07.4.25사하구의회의원 (다선거구)재선거실시와 관련 선거관리 경비지급
여권발급 지방분소 설치	158,200	145,031	-	13,169	07. 3. 5	여권발급 지방분소로 승인됨에 따라 사무실 설치 및 물품구입
교통행정과 사무실 복구 및 물품구입	86,954	82,190	-	4,764	07. 3.14	교통행정과 사무실 화재 발생으로 사무실 복구 및 장비 물품구입
강풍 피해어선 보상	3,000	3,000	-	-	07. 3.27	07.3.4~3.8 강풍 내습에 따른 어선 유실 피해 보상
지방의회 재선거 보전비용	40,000	40,000	-	-	07. 5.27	07.4.25 사하구의회의원 (다선거구)재선거 실시와 관련 선거보전

						비용지급
감천항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 패소 배상	450,000	436,374	-	13,626	07. 7. 2	감천항 배후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민원발생 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공사대금 추가지급

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

4. 검토의견

- 2007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956,518천원으로 지방선거 관리 경비 외 5건 909,144천원을 지출하고 47,374천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.

-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선거 관리경비 202,549천원, 여권발급 지방분소 설치 145,031천원, 교통행정과 사무실 복구 및 물품구입 82,190천원, 강풍피해 어선 보상 3,000천원, 지방의회 재선거 보전비용 40,000천원,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패소 배상 436,374천원입니다.

- 이중 지방선거 관리경비, 지방의회 재선거 보전비용, 여권발급 지방분소 설치는 시기적으로 1회 추경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,

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패소 배상, 교통행정과 화재로 인한 사무실 복구 및 강풍피해 어선 보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예산의 지출의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 불용액 47,374천원은 사전 예측 잘못과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됩니다.

향후 예비비 지출 과다책정 및 집행시기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.